#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50

발의연월일: 2022. 10. 6.

발 의 자:조은희·김기현·김도읍

김선교 · 김희곤 · 노용호

박성민 · 박수영 · 배현진

서일준 · 양금희 · 이은주

정희용 · 최영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임용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적용하면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전주환이 2018년 온라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문제없이 입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위반죄를 '성폭력범죄'수 준으로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당연퇴직 적용도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및 제61조제1호).

법률 제 호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의3 중 "규정된"을 "규정된 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단서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및 제61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6의3		
관한 특례법」 제2조에 <u>규정된</u>	규정된 죄 및 「정보통신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u>에 규정된</u>		
한 사람			
6의4.~8. (생략)	6의4.~8.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제61조(당연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			
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			
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 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 다.

2. (생략)

	「아동・	청소님	크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2	<u> 존제</u>
<u>2호, 「정보</u> 등	통신망	이용결	추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4조차	ll항제2	<u> </u>	
2. (현행과 같음	<u>( )</u>		